



1. 범위

1.1 상품과 서비스의 구매를 위한 이러한 거래 일반 조건 (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2에 위치한 페리유한회사와 대한민국 상법에서 규정하는 회사, 기타 법령에서 규정하는 법적 실체(이하 “공급사”) 간의 상거래에 전적으로 적용된다.

1.2 이 조건은 PERI에 대한 공급사의 모든 납품과 서비스에 전적으로 적용된다. 다른 규정, 특히 공급업체의 조건은 PERI가 명확하게 거부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조건은 PERI가 다른 조건을 아는 것에 대한 조건 없이 서비스를 수행하거나 수락하는 경우에도 전적으로 적용된다.

1.3 이 조건은 또한 PERI와 공급사 간의 향후 유사한 법적 거래에도 적용된다.

1.4 PERI와 공급사 간의 개별 계약은 개별적인 경우에 우선권을 가진다. 반증을 조건으로, 그러한 계약서의 내용은 서면 계약 또는 PERI의 서면 확인을 조건으로 한다.

1.5 법적 규정의 적용성의 표시는 단지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법적 규정은 이 조건에서 직접적으로 수정되거나 명확하게 배제되지 않는 한 이 조건에서 표시한 내용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적용된다.

2. 계약의 체결/계약서

2.1 오퍼, 비용 견적, 그리고 계약의 체결을 준비하는 공급사의 서비스는 무료이다. 오퍼가 더 긴 의무적 기간을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급사는 그의 오퍼에 대하여 4주 동안의 의무가 있다.

2.2 PERI의 주문서는 서면으로 발주한 경우에만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다. 서면 요구 양식은 팩스, 스캔한 이메일, 서명인이 있는 서류, Docusign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전자 문서 양식으로도 충족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와 달리 구두상으로 또는 전화나 메신저 등으로 한 주문은 PERI의 서면 확인이 필요하며 이를 충족해야 효력이 있다.

2.3 공급사는 confirmation@peri.de에 이메일을 통해 문장 형식의 구속력 있는 주문 확인서로 또는 납품이나 이행에 의해 5 영업일 이내에 주문을 확인해야 한다. 이 기간 후에는 PERI는 주문에 대하여 더 이상 의무가 없다. 기간이 지난 수락은 새로운 오퍼로 간주되며 PERI의 수락을 필요로 한다. 특히 수량, 가격, 인도 일자, 주문한 인도 또는 서비스의 특성에 관한 주문서와 차이가 있는 주문 확인서는 새로운 오퍼로 간주되며 PERI의 수락을 필요로 한다.

2.4 공급사가 PERI에게 제출한 오퍼를 준수해야 하는 기간 이내에 공급사가 PERI로부터 주문서를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뒤늦게 수령하는 경우), 공급사는 PERI의 주문서를 수령한 후 즉시 PERI에게 PERI의 주문서를 뒤늦게 수령한 것을 통지해야 한다.

3. 대금과 대금 지급

3.1 주문서에 명시된 대금은 구속력이 있다.

3.2 PERI의 주문서에 별도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대금은 포장과 선적, 그리고 청구서에 부가세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는 한 법정 부가세율에 따른 부가세를 포함하는 DDP 인코텀즈® 2020에 따라 구속력이 있다.

3.3 청구서는 각 주문과 인도에 대하여 구분하여 각 주문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PDF로 주문 번호와 기타 주문 식별 번호 (판매상 번호, 품목 번호, 주문 품목 포함)를 명시하여 발송해야 한다. 여러 개의 청구서를 하나의 PDF에 통합하지 않아야 한다.

3.4 청구서 사본은 사본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청구서에 납세자 번호가 명시되어야 한다.

3.5 합의된 대금은 전체의 하자 없는 인도 또는 서비스 (합의된 인수 포함)와 대금 지급을 위한 합당한 청구서를 수령한 후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3.6 PERI가 개개의 경우에 선급금을 지급한 경우, 공급사는 최종 의무 불이행 또는 불량한 이행으로 인해 초과 지급되는 선급금의 상환을 위한 담보로서 PERI가 동의하는 충분한 신용을 갖춘 신용 기관의 자체 채무 보증서를 PERI에게 제공해야 한다.

3.7 PERI의 대금 지급은 계약서에 따른 공급사의 인도 또는 이행의 인정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3.8 공급사가 그의 오퍼를 제출할 때 또는 PERI에게 인도와 용역 제공을 하는 과정에서 허용될 수 없는 경쟁의 제한 또는 불공정한 행위로 간주되는 합의를 입증 가능한 방법으로 하는 경우, 공급사는 다른 금액의 피해가 입증되지 않는 한, 청구서 금액의 15%를 일괄 손해 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4. 인도와 서비스 시기, 인도, 인도와 인수의 지연

4.1 PERI의 승인된 주문서에 명시된 인도 및 서비스 제공의 시기는 구속력이 있다. 인도 및/또는 서비스 제공 시기가 주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다른 약정이 없을 경우, 인도 및 또는 서비스 제공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4주 이후이다. 공급사는 어떤 이유든 합의된 인도/서비스 제공 기한을 맞출 가능성이 없을 경우 즉시 서면으로 PERI에게 통지해야 한다. 주문서에 명시된 배송 주소 또는 인수 장소에 배송이 도착하는 것이 인도/서비스 제공 시기의 준수를 결정한다. 인수가



계약적으로 합의된 경우, 성공적인 인수가 결정된 것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4.2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납품은 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에 유효한 DDP 인코텀즈® 2020에 따라 주문서에 명시한 배송 주소로 해야 한다.

4.3 미완성 상태의 인도/서비스 제공, 부분적인 인도/서비스 제공은 PERI와 사전 협약을 하고 PERI의 서면 동의를 받은 후에만 허용된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PERI는 공급사의 비용과 위험으로 배송된 상품을 반송할 권리를 가진다. PERI가 그러한 배송을 인수하는 경우, 제3.5항에 따른 지급 기한은 합의된 인도/서비스 제공 일자부터 시작한다.

4.4 모든 주문서 번호 및 기타 합의된 정보 (채권자 번호, 품목 번호, 주문 번호 등 포함)가 모든 선적 명세서, 탁송 화물 운송장 또는 기타 인도 서류, 청구서 또는 기타 서신에 명시되어야 한다. 납품서는 상품의 인도에 동봉되어야 한다.

4.5 공급사는 늦어도 구매하는 상품 (이하 “납품 품목”이라 한다)을 공급사가 인도할 때 필요한 품질 증명서를 PERI에게 넘겨주고, 지체 없이, 그러나 늦어도 납품 품목을 인도할 때 시험 증명서, 분석 보고서, 인수 증명서 등 납품과 계약적으로 규정되거나 통상적인 사용을 위해 필요한 모든 증빙을 제공해야 한다.

4.6 공급사에게 책임이 있는 납품의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PERI는 다른 법적 청구권을 침해하지 않고, 지연되는 상품 금액의 5%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연되는 상품 금액에 대하여 하루당 0.25%의 위약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몰수된 위약금은 지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기타 청구권에 대하여 상쇄되어야 한다.

4.7 합의된 인도 일자를 준수하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즉시 서면으로 PERI에게 보고해야 한다. 법적 요건에 따라 불이행에 대하여 계약을 취소하거나 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PERI의 권리는 제4.6항에 따른 책임 귀속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5 위험 이전

공급사가 서비스 제공 장소에서 설치 또는 조립을 해야 할 계약적 의무가 없는 납품 품목을 인도하는 경우, 납품 품목의 우발적 손실 및 우발적 품질 저하의 위험은 PERI가 지정한 배송 주소로 납품 품목을 인도하는 즉시 PERI에게 이전된다. PERI의 인수가 있어야 하는 경우, 위험 이전의 결정적인 시점은 PERI의 인수 시점이다. PERI가 인수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인도 또는 인수는 동일하다.

6 규제 준수, 수입 및 수출

6.1 공급사는 납품 품목 또는 그 부품이 모든 준거법, 지침, 규정 또는 기타 공법의 규정과 당국 및

전문가 협회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6.2 특히, 공급사는 납품 품목 또는 그 부품이 국가적 또는 국제적 수출 제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납품 품목 또는 그 부품이 그러한 수출 제한의 대상이 되는 경우, 공급사는 자신의 비용으로 전세계적인 수출을 위해 필요한 수출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납품 품목 또는 그 부품이 그러한 수출 제한의 대상이 되는 경우, 납품 품목을 PERI에 납품하기 전 적절한 시간에 자신의 비용으로 수입과 전세계 수출을 위해 필요한 허가를 취득하는 것은 공급사의 책임이다.

7 사용권

7.1 개별적으로 제조한 제품에 관한 샘플, 비용 견적서, 도면, 서류 및 물리적 또는 무형의 유사한 정보의 사용에 대하여, 공급사는 PERI에게 독점 사용권을 부여한다. 공급사 또는 해당 저자의 사용은 제외된다. 사용권의 부여는 무료이며, 내용에 제한이 없고, 기간에도 제한이 없다.

7.2 PERI는 소유권이 PERI에게 이전되거나, 또는 전항에 따라 PERI에게 사용권이 부여된 샘플, 비용 견적, 도면, 서류 및 물리적 또는 무형의 유사한 정보를 적합한 상거래의 맥락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8 품질, 결함 조사

8.1 상품의 인도와 서비스는 품질 약정과 첨단 기술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품질 증명서, 인수 증명서, 시험 증명서 및 분석 보고서와 합의된 규격서에서 제시된 정보는 품질 약정으로 간주된다.

8.2 제8.3항에 따른 PERI의 의무를 침해하지 않고, 공급사는 납품 품목을 PERI에게 인도하기 전이 납품 품목의 완전성과 무결성을 확인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데 있어서 공급사는 최종 초기 점검을 수행해야 하며, 합당한 경우, 공급사가 전체 인도 범위가 결함이 없고 완전하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최종 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8.3 PERI는 배송된 제품의 수량, 동일 제품 여부, 운송 중 손상 여부를 검수한다. 배송 중 결함 발견 시 PERI는 서면이나 텍스트 양식으로 지체없이 공급업체에 결함 발견 후 2주 이내에 통보한다.

9 결함에 대한 권리



9.1 아래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중대하고 그리고/또는 법적인 결함의 경우 PERI의 권리는 법적 규정에 따라야 한다.

9.2 PERI는 비록 PERI가 중대한 과실의 결과로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결함에 대하여 모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제한없이 결함에 대한 청구권의 권리가 있다.

9.3 PERI의 법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아래 사항이 적용된다: 공급사가 PERI가 정한 합리적인 기간 내에 보완 조치 - PERI의 재량에 따라 결함의 시정 (수리) 또는 결함이 없는 품목의 인도 (차후 인도) - 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PERI는 자체적으로 결함을 시정하고 공급사에게 필요한 경비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위험에 처한 운영상의 안전 또는 균형에 맞지 않는 피해의 발생 방지와 같이 긴급한 경우, PERI는 해당 기한을 정하지 않고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고 이 목적을 위해 소요된 비용을 공급사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다. 공급사는 가능할 경우 자체 시정이 수행되기 전에 그러한 조치에 대하여 지체없이 통지를 받아야 한다. 공급사가 법적 규정에 따라 후속 보완 시정을 거부할 권리가 있을 경우 자체 시정을 할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9.4 법적 구상 청구권이 PERI에게 모두 부여되어 있다. 결함이 있는 상품이 PERI 또는 다른 회사에 의해 다른 제품에 설치하는 등 추가로 처리된 경우에도 공급자에 대한 구상권에서 발생하는 청구권이 PERI에게 부여된다.

10 리콜, 연쇄적 오류

10.1 규격서/서비스 설명서/주문서에 더 상세하게 기술된 PERI가 구체적으로 제작하는 제품 (이하 "PERI 최종 제품")으로 추가 가공하기 위해 납품 품목을 필요로 하고 사용하고, 최종 제품을 고객 (이하 "(이하 "PERI 최종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 다음 사항이 적용된다:

10.2 충분성을 토대로, 공급사가 인도한 품목에 연쇄적 결함이 있는 경우, PERI는 그의 재량에 따라 최종 소비자에게 납품한 그의 최종 제품을 리콜 (이하 "리콜"이라 한다)할 권리가 있다. 연쇄적 오류는 5%를 초과하는 납품 품목이 유사한 결함을 가지고 있는 경우 발생한다. 이 항의 의미 내에서 리콜은 최종 소비자가 납품 품목의 사용을 통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PERI가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특히, PERI는 경고를 발부하고 불량 납품 품목의 교체를 위해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10.3 PERI가 제10.2항에 따른 리콜을 공급사에게 통지하는 경우, 공급사는 각 리콜되는 PERI 최종 제품에서 결함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PERI가 연쇄적 오류의 영향과 결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PERI에게 제공해야 한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공급사는 관련된 배치 (batch)의 제작과 생산에 관한 배치 번호와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10.4 공급사는 리콜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리콜 비용은 다음과 같다:

- PERI 최종 고객에게 배송된 PERI 최종 제품의 반품 비용.
- 결함이 있는 PERI 최종 제품의 수리 및 교체 비용.
- 리콜 후에 수리한 그리고/또는 교체하는 PERI 최종 제품을 PERI 최종 고객에게 배송하는 비용.
- PERI와 공급사가 납품 품목의 결함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불량 납품 품목을 폐기하는 비용.
- PERI가 PERI 최종 제품의 결함을 완전히 고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리콜의 일환으로 PERI에게 반품된 PERI 최종 제품의 폐기 비용.
- 리콜의 상황에서 모든 결함을 수리하기 위해 PERI가 고용한 직원들의 모든 비용.
- PERI의 최종 고객이 PERI에 대하여 청구하는 손해 배상의 감액과 청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비용과 경비.

10.5 공급사는 리콜 과정 동안 PERI가 교체한 모든 납품 품목에 대하여 공급사의 비용으로 PERI에 교체품을 공급할 의무가 있다.

11 소유권의 보유

11.1 소유권의 단순 보유를 넘어서는 공급사의 소유권 보유는 배제된다. 공급사가 인도된 품목의 소유권을 보유한 경우, PERI가 이미 가공, 연결, 블렌딩 또는 혼합을 통해 이들 품목의 소유자가 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소유권의 보유는 이들 품목에 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적용된다.

11.2 PERI가 부품을 공급사에게 공급하는 경우, PERI는 이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한다. 공급사가 PERI 이외 다른 사람이 소유하는 품목과 가공, 블렌딩 또는 혼합하는 것은 PERI를 대신하여 수행된다. 가공, 블렌딩 또는 혼합의 경우, PERI는 가공, 블렌딩 또는 혼합을 하는 시점에 PERI 품목의 가액과 다른 가공되는 품목 간의 비율에 따라 가공, 블렌딩 및 혼합되는 품목의 공동 소유권을 취득한다.

11.3 공급사에게 제공된 PERI의 모델, 샘플, 생산 장비, 도구, 측정 및 시험 장비, 별도로 제공된 자료, 도면, 공장 표준 시트 및 인쇄 견본은 PERI의 재산이다.

11.4 제11.3항에서 명시한 서류는 PERI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별적인 경우에 있어서 별도로 명확하게 합의하지



않는 한, 제11.3항에서 언급한 서류는 언제든지 PERI가 요청할 수 있다. 공급사는 제11.3항에서 언급한 서류에 관해 보유 권리가 없다.

12 생산자와 제조물 책임

12.1 공급사가 제품 손상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원인이 그의 지배 및 조직의 지역 내에 정해져 있고 공급사 자신이 외부 관계에 대하여 책임이 있을 경우, 공급사는 제3자의 클레임에 대하여 PERI를 면책해야 한다.

12.2 공급사의 면책 의무의 일부로, 공급사는 PERI가 수행한 리콜 조치를 포함하여 제3자를 사용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하거나 그와 관련된 PERI의 모든 경비를 보상해야 한다. PERI는 가능하고 합리적인 경우 리콜 조치의 내용과 범위를 공급사에게 알려 주어야 하며, 공급사에게 논평할 기회를 허용해야 한다. 기타 법적 청구권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12.3 배상 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해 공급사는 인적 상해/재산 피해 건당 10억 이상의 운영 및 제품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공급사가 확인한 최종 주문에 관련된 결함에 대한 권리의 시효의 만료까지 해당 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13 기밀 유지, 제3자 지적 재산권

13.1 공급사는 개별 계약의 기밀 유지의 범위 내에서 PERI가 제공한 모든 정보를 기밀로 취급하고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13.2 정보는 특히 이 정보가 제공되는 형식 (예를 들면, 대화, 장거리 통화,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 매체에 의해, 데이터 전송 또는 메일 발송에 의해)에 상관없이 사본과 초안, 스케치, 기술 프로토콜, 모델, 전자 데이터를 포함하는 서면 형식의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시각적 및/또는 청각적으로 인지되는 모든 정보와 노하우 역시 수집된다. 기밀 정보는 특히 상품과 서비스에 관련되거나 연구 및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기술 데이터, 계획, 도면, 계산, 실행 지침, 개발에 대한 정보 및 모든 회사 데이터를 포함한다.

13.3 기밀 유지 의무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거나 합법적으로 제3자로부터 취득한 정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3.4 공급사가 기밀 정보가 불법적으로 제3자에게 공개된 것을 탐지한 경우, 공급사는 즉시 이 사실을 PERI에게 통지해야 한다.

13.5 공급사는 대한민국 국내 또는 외국의 제3자 지적 재산권을 납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위반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국내 구역 또는 해외에서 제3자의 주문한 상품의 용도가 상품의 인도 또는 서비스, 그리고 주문한 상품의 사용과 관련하여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적 재산권의 침해로 인해 제3자가 PERI를 상대로 클레임을 제기한 경우,

공급사는 그러한 클레임에 대하여 PERI를 면책해야 하며, 초래된 피해가 공급사의 관리 및 조직 영역에서 발생한 경우, 제3자의 클레임으로부터 또는 그와 관련하여 PERI에게 어쩔 수 없이 발생한 모든 경비에 대하여 PERI에게 보상해야 한다.

14 보험

14.1 PERI는 납품 품목에 대한 보험료와 특히 운송 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

14.2 PERI는 운송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보험에 들어있다.

15 양도와 담보

15.1 계약적 청구권의 양도 또는 담보는 PERI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유효하다.

16 상계와 유치권의 행사

16.1 PERI는 PERI가 주장하는 결함에 대한 클레임 또는 기타 클레임의 경우 합당한 금액의 지급을 보류하거나 상계할 권리를 보유한다.

16.2 분쟁이 있거나 또는 합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반대 청구로 인한 공급사의 상계 또는 유치권의 행사는 배제된다. 단, 반대 청구는 동일한 계약 관계를 토대로 해야 한다.

17 예비 부품

17.1 공급사는 예상되는 기술적 사용의 기간 동안, 그리고 합리적인 조건에 따라 납품한 후 최소 10년 동안 납품 품목의 예비 부품을 보유할 의무가 있다.

17.2 공급사가 예비 부품의 생산을 중단하는 경우, 합리적인 리드 타임을 두고 PERI에게 통지하여 PERI가 최종 주문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8 참조 문헌과 간행물

18.1 참조 문헌과 간행물을 제공할 때, 공급사는 PERI가 사전에 서면 동의를 한 경우에만 PERI의 상호 또는 상표를 제공할 수 있다.

19 불가항력

19.1 PERI가 불가항력, 폭동, 천재지변, 화재, 홍수, 전염병 또는 유행병, 또는 PERI에 기인하지 않는 불가항력을 포함하는 기타 예측 불가능한 상황, 또는 그러한 사건의 영향의 결과로 그의 계약적 의무, 특히 인수 의무의 이행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간은 각 경우에 방해의 기간만큼 연장되어야 한다.

19.2 PERI는 그러한 상황의 개시와 가능한 종료에 대하여 공급사에게 통지하고 가능한 한 빨리 그러한 지장을 시정하기 위한 합리적인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9.3 공급사가 불가항력으로 인해 그의 계약적 의무, 특히 납품 의무의 이행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공급사는 제19.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PERI는 계약 이행 불능의 기간이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코로나 유행병은 더 이상 예측 불가능한 사건이 아니며, 따라서 코로나는 공급자를 그의 납품 의무에서 해제하지 않는다. 공급사는 납품 시기와 납품 수량을 준수하기 위해 적합한 예방책을 취해야 한다.

20 반품 운송을 위한 포장 비용

20.1 공급사는 납품 품목의 적합한 반품 운송 또는 포장의 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21 이행 장소

21.1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PERI에 대한 공급사의 의무 이행 장소는 PERI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2이다.

22 관할구 장소와 법의 선택

22.1 계약 관계로부터 발생하거나 그와 관련된 모든 분쟁에 대한 독점적이고 – 또한 국제적인 –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PERI는 공급사의 주소지 소재 관할법원에서 법적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한다.

22.2 이 조건과 PERI와 공급사 간의 모든 계약 관계는 대한민국 법령의 적용을 받으며, 국제 물품매매 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을 배제한다.

23 개인 정보

23.1 PERI는 계약적 합의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고 편리한 경우, 대한민국 개인정보보호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PERI 데이터 보호 신고서에 따라 공급사의 직원의 개인 정보를 일반 정보 보호 규정의 의미 내에서 수집, 보관 및 사용할 권리를 보유한다. 공급사는 그의 관련된 직원들에게 이에 대하여 알려주고, 대한민국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관련 직원으로부터 개인정보수집, 이용, 보관에 필요한 동의서를 수령하여 PERI에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PERI 개인정보 보호 방침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PERI 개인정보 보호 방침은 <https://www.peri.com/en/privacy-policy.html>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요청할 경우 문자 형태로 제공될 수도 있다.

24 분리 가능성 조항

24.1 이 조건의 개별 조항이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나머지 조항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한 경우, 당사자들은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한 조항 대신에 이 조건의 실제적 및 경제적 목적에 최대한 적합한 다른 유효하고 집행 가능한 조건을 사용할 것을 약속한다. 이는 조건의 공백에도 적용된다.